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방부장관은 시·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을 제공하고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그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의2 신설).
-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, 지하 매설물, 위험물,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되,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제거·개량비를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의3 신설).
- 공익사업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협조 및 관련 규제 해제의 우선 검토를 규정하고, 공공사업 의제, 공유 재산 교환 및 건축물대장 기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(안 제27조의4 신설).

II. 검토의견

1. 약칭 신설(안 제27조의2제1항)

개정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는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, 처분방법 및 공익사업 활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공익적·지역발전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내용임.

시행 예정인 개정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는 “미활용 군용지”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고¹⁾, 개정안은 이 중 접경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특례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개정안 제27조의2제1항은 특례의 대상을 “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중 접경지역 안에 있는 토지”로 규정하면서도, 같은 조 제2항과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에서는 별도의 약칭 없이 “미활용 군용지”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접경지역 안의 토지로 한정되는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음. 약칭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를 간결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서, 약칭하려는 문구와 정확히 부합하는 위치에서 규정하여야 함.²⁾

따라서 안 제27조의2제1항의 “접경지역 안에 있는 토지” 다음에 “미

1)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21667호, 2026. 11. 20. 시행 예정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. “미활용 군용지”란 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.

2) 국회사무처, 「법제기준과 실제(2024 개정증보판)」, pp.231-232

활용 군용지”라는 약칭을 신설하여 같은 조 제2항과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접경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함.

[안 제27조의2제1항에 대한 수정의견]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27조의2(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) ① 국방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중 접경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현황을 시·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.	제27조의2(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토지(이하 “미활용 군용지”라 한다)의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생략)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최 기 도)